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시부터</b>	<b>배포</b>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진창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황기정 사무관 (02-2100-2832) 김경호 사무관 (02-2100-2836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성기(02-2100-2990)		김태훈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희준(02-3145-8070)		정대헌 팀장 (02-3145-8072)

## 제 목 : 「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」 관련

- 일부 언론에서는 “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6월부터 더 조인다 또는 대출문턱이 높아진다”라고 보도하고 있으나,
- 금번 제2금융권 DSR 시행은
  -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대출 취급시 소득증빙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점을 개선하여,
  - 제2금융권 금융회사 일선에서 **소득증빙을 통한 상환능력 확인 관행**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
- DSR 관리지표 설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은
  - 시범운영 기간중 업권별 DSR을 집계하고, 高DSR 산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을 분석하였으며,
  - 소득증빙 절차 강화에 따른 DSR 감축효과 등을 시뮬레이션
  - 이를 토대로 각 업권과 충분히 협의하여 대출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음
- 예를 들어, 시범운영기간중 상호금융권의 평균DSR은 261.7%이나, **소득확인을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평균DSR이 176% 내외로 하락가능 했을 것으로** 추정됨
  - 상호금융권이 **소득확인 절차를 충실히 구비·집행할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 비율을 관리지표 수준인 160%로 하향 안정화**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 
 (176%→21년말까지 160%, 16%p↓)

□ 아울러, 농어업인 등 제2금융권 이용차주에 대한 **소득인정기준 보완\***, **DSR 산정 대출 범위의 합리적 조정\*\*** 등이 병행되므로,

\* ①신고소득 확인서류에 ‘조합 출하실적’을 추가 ②인정소득·신고소득의 인정상한 상향(5천만원→7천만원) ③신용정보회사 추정소득의 인정비율 확대(80%→90%)

\*\* 예적금담보대출 DSR 산정 : (현행)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영 → (조정) 이자상환액만 반영

○ 제2금융권의 대출공급, 이용 차주의 대출접근성 등에 관해 **큰 충격없이 DSR 관리지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**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